

(특허청)민원인이 출력한 문서를 공문서로 보는 전자문서

[소관 : 정보시스템과]

제정 2007. 8. 10. 특허청고시 제2007-10호
일부개정 2009. 8. 24. 특허청고시 제2009-23호
일부개정 2016. 3. 22. 특허청고시 제2016-6호
일부개정 2020. 7. 6. 특허청고시 제2020-22호

제1조(목적) 이 고시는 민원처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0조(전자문서의 출력사용 등)의 규정에 의하여 특허청장 또는 특허심판원장이 민원인에게 통지한 전자문서를 민원인이 출력한 경우, 그 출력문서를 「행정 효율과 협업 촉진에 관한 규정」 제3조제1호에 따른 공문서로 보는 전자문서의 종류를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.

제2조(대상이 되는 전자문서) 제1조에서 규정하는 전자문서는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전자문서로 한다.

1. 출원사실증명원
2. 심판청구사실증명원
3. 심결확정사실증명원
4. 심결문등본송달증명원
5. 등록원부등본
6. 각하결정문등본송달증명원
7. 보정각하결정문등본송달증명원
8. 심판비용액결정문등본송달증명원
9. 온라인등록증

제3조(재검토기한) 특허청장은 「훈령·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」에 따라 이 고시에 대하여 2020년 7월 1일 기준으로 매 3년이 되는 시점(매 3년째의 6월 30일까지를 말한다)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.

부 칙 <제2016-6호, 2016. 3. 22.>

1. (시행)이 고시는 고시한 날부터 시행한다.
2. (경과규정) 이 고시 시행 이전에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고시한 사항은 이 규정에 의해 고시한 것으로 본다.

부칙 <제2020-22호, 2020. 7. 6.>

이 고시는 2020년 7월 6일부터 시행한다.